

수도권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조치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30365(2020.11.22.) 및 31122(2020.11.29.) 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8종의 집합금지 또는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

1 적용 지역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
*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

2 적용 대상

- (대상) 중점관리시설 8종

-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

※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·조정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3 적용 기간

- 2020년 12월 8일(화) 0시 ~ 12월 28일(월) 24시

※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4 법적 근거

-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, 제80조제7호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5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**중점관리시설 8종 집합금지 조치**
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)



② (지자체) 관내 **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**,
집합금지 조치 **준수 여부 현장점검** (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③ (지자체) **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**, 확진자 발생시 **손해배상 청구**

○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☞ 감염병예방법(제49조제1항제2호)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**집합금지 조치**

- 위 기간 동안 **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**

○ 지자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**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**

※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,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
- 이행 여부 등 **현장점검 실시**

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고발 조치(벌금300만원 이하)**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**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**